

# 조합원총회 및 지방본부 조합원총회 소집공고

## (위원장/지방본부위원장/지부장 선거)

### 공 고

KT 노동조합 규약 제 4 장 제 1 절 제 20 조, 제 21 조, 제 5 장 제 48 조, 지방조직운영 규정 제 2 장 제 6 조, 제 7 조, 제 25 조 및 선거관리 규정 제 1 장 제 6 조, 제 6 조의 2 에 의거 각급 조직의 대표자 선출을 위한 조합원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 공고합니다.

- 아 래 -

#### ○ 일시

- 위원장 및 지방본부위원장: 2011. 12. 13(화).

(단, 신규후보 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2011. 12. 8.)

- 지부장: 2011. 12. 8(목).

#### ○ 장소: 각 지부(분회)내 투표 가능한 장소

#### ○ 목적사항

1. 위원장 선출
2. 지방본부위원장 선출
3. 지부장 선출

#### ○ 기타사항

- 위원장 또는 지방본부위원장 선거에 대하여는 선거관리규정 제 6 조의 2 에 따라 선거공고 기간을 단축하여 2011. 12. 13.에 조합원총회 또는 지방본부 조합원총회를 실시하되, 다만 위원장의 신규후보 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를, 지방본부 위원장의 신규후보 등록이 없는 지방본부의 경우에는 그 지방본부 조합원 총회를 각 2011. 12. 8.에 개최한다. 이 경우 신규후보라 함은 2011. 11. 14. 자 선거공고에 따라 각급 조직의 대표자 선거에 입후보하지 않은 자로서 이번 공고에 따라 새로이 입후보한 자를 말한다.
- 선거관리규정 제 6 조의 2 에 따라 선거관리규정 제 6 조 제 1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급 조직의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는 신규후보의 등록 여부에 따라 각각 분리하여 시행하거나, 동시에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.
- 2011. 11. 14. 공고에 따라 각급 조직의 대표자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들이 이번 선거에 다시 입후보하는 경우 기존에 납부 또는 제출한 기탁금 및 추천서는 이를 금번 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위한 기탁금 및 추천서로 같음한다. 만약 2011. 11. 14. 공고에 따라 각급 조직의 대표자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가 이번 선거에 다시 입후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청에 따라 기탁금을 즉시 반환한다.

2011.11.30.

KT 노동조합 위원장

